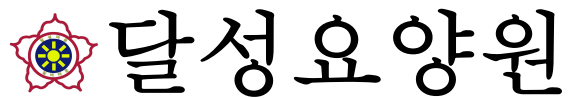


이용계약



사업장명 : 달성요양원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4길 8-11(유가읍) 4층

전화번호 : 053) 617-9999

대표자 : 홍 선 이

사업종류 : 서비스/노인전문요양시설

이 용 계 약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I. 이용계약 목적

1.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 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설명서」와 그에 따른 「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이용료),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 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 원칙, 급여제공 서비스, 급여제공계획 등 전반적인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대 시설과 계약자는 그 확인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4.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증서
 -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③ 개인 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④ 입소시설용 전염성 질환 건강검진 진단서
 - ⑤ 전원 연계기록지
 - ⑥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ex, 의사소견서, 처방전, 전염성 질환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 구속 동의서 등)

II.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 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설명서」와 그에 따른 「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Ⅳ. 급여비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 등외입소자의 입소를 최대한 지양하되 피치못 할 상황으로 등외입소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해당 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한다.

10.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내 역
공단 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80%~10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0%~100%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일반)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임.
	장기요양급여비용 (감경 12%)	12%	보험공단이 88%이고 개인 부담금이 12%임.
	장기요양급여비용 (감경 8%)	8%	보험공단이 92%이고 개인 부담금이 8%임.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초생활수급)	0%	보험공단이 100%이고 개인 부담금이 0%임.
	식사재료비	일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용 게시 (일 3,000원 × 3식)
	간 식	일 1,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용 게시 (일 1,000원 × 2회)
	특별침실 이용료	월 100,000원	

V.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 100분의 8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식대 및 간식비도 제외된다.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VI.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①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VII.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⑪ 개인정보 열람 및 서비스 진행사항에 대해 알 권리
- ⑫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소 및 퇴소 절차 비용 등 부담에 관한 의무
-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Ⅷ. 퇴소 및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인도하여 가는 경우
3. 다른 시설로 입소 조치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입소자가 퇴소하였을 경우에는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시·군 군수에게 보고하여 퇴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9.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2.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⑤ 사망자 처리

1.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장은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장례절차는 시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보호자가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고 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면 시설장은 징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4. 장례 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되 시설 내 장소 또는 영안실에서 시설의 주관 하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사망자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6. 어르신의 사망으로 인한 퇴소시 어르신에 대한 조의금 및 화환에 대한 금액은 당해 년도 혹은 이전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⑥ 유류금품의 처리

1.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가. 사망자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경비 부담

나. 장례비용

다. 기타 사망자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경비 충당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사망자의 유족 이 사망자의 생존 시 보호자로서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 선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X.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하는 것이다.